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 예우를 반영하여 우선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된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 주민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항 및 범명의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1호서식 개정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제38조를 제42조로함. (안 제1조)
- 『모·부자복지법』제15조를『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로 함.(안 제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2로 함.(안 제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을 명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별지1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개정. (안 제4조 별지1호서식)
- 제1조(목적)에서 우선권 대상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 개정 (안 제5조 별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02-3396-5372, FAX : 02-3396-8734, E-mail : freshkks@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
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
부모가족 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
하여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
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중구”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문 판매대 등”을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 판매대 등”이라 한다)”로 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며,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게시판, 구정소식지, 구보게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를 “게시판, 구정 소식지, 구보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산청”을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으로 하고, “장애인 등”을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를 “방법은 해당”으로 하고,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별지 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용의 청사내
신문판매대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

순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신 · 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 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 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에 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중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 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이하 "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 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 인복지법제2조에서규정한 자)및 65세 이상노인인 생활보호대상 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 순국선열유족(이하"장애인 등" 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 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 별시 중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 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 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 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 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p>

현 행	개 정 안
	<p>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중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u></p> <p>2. (생략)</p> <p>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용의 청사내에 <u>신문판매대</u>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u>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u>.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u>한한다</u>.</p>	<p>제2조(적용의 범위) ① ----- ----- -.</p> <p>1. <u>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 <u>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 판매대 등"이라 한다)</u>를 - - <u>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 --- <u>한정한다</u>.</p>
<p>제3조(사전광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장은 <u>제2조의 규정에 의한</u>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u>게시판, 구정소식지, 구보게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u> 사전 광고하여야</p>	<p>제3조(사전광고) ----- ----- ----- <u>제2조에 따른</u> ----- ----- <u>게시판, 구정 소식지, 구보 등의 방법으로</u> -----</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 ----- ----- <u>방법에</u> <u>관하여는 당해</u> ----- <u>규정에</u> <u>의한다.</u></p>	<p>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u>방법은</u> <u>해당</u>----- <u>규정에</u> <u>따른다.</u></p>
<p>제8조(계약의 해지) ----- <u>각 호의</u> <u>1</u> ----- ----- 1. ~ 4. (생 략)</p>	<p>제8조(계약의 해지) ----- <u>각 호의</u> <u>어느 하나에</u> ----- ----- 1.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 ----- ----- <u>1회에 한하여</u> ----- -----.</p>	<p>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 ----- ----- <u>한 차례만</u> ----- -----.</p>

현 행

[별표]

판매대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때의 우선순위

순 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 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
1	장애인등급 1~2급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대상자
2	장애인등급 3~4급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
3	장애인등급 5~6급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개 정 안

[별표]

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

순 위	장 애 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6』

제47조의6(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